

삼양식품(주)
준법경영준수편람

※ 본 준법경영준수편람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회사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내부규정 및 기타 자료 등을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Contents

제 1 장 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의 개요	1. 준법통제준수의 이해	3
	(1) 준법통제준수의 목적 (2)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원칙	
	2. 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	4
	(1) 준법지원인 선임 (2)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3) 최고 경영진 의지 표명 (4) 내부감시체계 구축 (5) 제재조치 운영 (6) 임직원 교육 진행 (7) 준법경영준수편람 제작 (8) 효과성 평가 진행	4 4 4 4 5 5 5 5
제 2 장 임직원의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법규 소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6
	(1) 부당지원행위 (2)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 지원행위 2) 자산·상품 및 용역 지원행위 3) 인력 지원행위 4) 통행세 (3) 계열사 내부거래 시 가이드라인	6 6 6 10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11
	(1) 하도급에 대한 이해 1) 하도급거래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2)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1)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요약 2) 하도급 거래 단계별 원사업자의 유의사항 3) 위반 시 제재 4) 하도급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 5) 의결 사례	11 13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23
	(1) 표시광고법의 목적 1) 표시광고의 구분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4) 위반 시 제재 5) 표시광고행위 시 유의사항 6) 의결 사례	23 23
제 3 장 삼양식품(주)의 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	1. 조직도 및 관련 부서	30
	2. 내부감시체계 운영 (1) 직무전결규정 (2) 내부고발시스템 (사이버감사실)	31
	3. 준법자율점검 Checklist	32

제 1 장 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의 개요

1. 준법통제준수의 이해

(1) 준법통제준수의 목적

준법통제란 기업이 사업운영 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업무수행 관련 법규를 사전 교육 및 체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원칙

삼양식품(주)는 임직원의 직무 수행 및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법규준수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준법통제시스템 (Compliance Program)을 구축 및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법경영 실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임직원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근로기준 준수, 고용평등 등 인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상생협력	협력업체를 존중하고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부정부패 방지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합니다.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	회계 관련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업 정보 및 중요사항 등을 성실하게 공시합니다.
영업비밀 및 지식 재산권 보호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사용, 복제, 배포 등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과 방법으로 고객 및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사용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품질 환경·안전 기준 준수	환경 관련 법규 및 소비자·사업장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소비자 및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

(1) 준법지원인 선임

우리 상법에서는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선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3분기 자산이 5,000억을 달성함에 따라 2021년 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준법통제 및 지원 담당부서로 '준법지원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실'을 신설하여 준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경영 문화의 정착을 통한 공정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삼양식품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임직원의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지원인은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보고
-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시정의 요구
-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제재 요청
-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실시
- 사내 법적 이슈에 대한 상시 법적 자문 업무 수행

(3) 최고 경영진 의지 표명

당사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규제에 대한 이해 및 대응을 위해 2021년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하였고 당해에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로 준법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내부감시체계 구축



임직원의 법률 위반 리스크를 예방 및 조기 발견 하기 위하여 내부감시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 영업, 생산, 마케팅 등 공정거래 관련 협력업체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경우 업무 수행 전 사전 질의 및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 제재조치 운영

당사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법 위반 행위 발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 및 임직원의 준법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임직원 교육 진행

구분	내용
Compliance 교육	준법경영의 중요성 및 준법경영 미비 시 발생하는 위험 예시를 교육하여 각 부서의 행동기준으로서의 준법경영을 강조 - 연간 1회 교육
부정부패예방 교육	윤리준법경영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의 확립을 목표로 관련 사례, 법령,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연간 1회 교육
공정거래법 교육	투명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고 업무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위반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 - 반기 1회 교육 (목표)
당사 경영전략과 관련된 법률 이슈 교육	당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의 규제 동향 등을 파악하여 회사 경영 활동에 필요한 법률 insight를 제공하여 임직원의 업무 중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 - 월 1회 그룹웨어를 통한 전사공지

(7) 준법경영준수편람 제작

준법경영준수편람은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 내 준법경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편람은 연 1회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팀에 의하여 작성되며,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작 및 배포됩니다.

(8) 효과성 평가 진행

전 임직원의 준법경영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리스크 사전 점검을 통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준법경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취합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당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한 투명경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임직원의 업무 상 주의가 필요한 법규 소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1) 부당지원행위

1) 의미

① 정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참고) *'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련 법령의 면탈, 회피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2)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지원행위

의미	- 가지금금,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금금,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예시	①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리보다 저리로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②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액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 ③ 지원객체 소유 건물, 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 지급한 경우 ④ 임대료를 약정 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DO]

- ①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 별 평균 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합니다.
- ②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 ③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내 회수하고, 변제기를 초과하여 회수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 여야 합니다.

[DON'T]

- 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적용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 리와의 차이가 7%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 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제공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사례

• **사실관계**

아*****그룹은 2016. 8. 11. ~ 2017. 8. 11. 기간 동안 코***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기가 소유한 우리은행 750억원의 정기예금을 코***에게 담보로 무상제공 하였다. 코***은 위 담보 를 이용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금리로 5회에 걸쳐 차입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위는 아*****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코***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 차입 시 적 용받은 금리(1.72~2.01%)는 코***의 개별 정상금리(2.04~2.23%)보다 낮은 금리로서 차이가 있는 바, 아 *****그룹과 코***의 이 사건 담보제공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자산, 상품 및 용역 지원행위

의미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① 지원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②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③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게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 터 매수한 경우 ④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⑤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 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 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⑥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DO]

- ①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 ②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의 조건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③ 계열회사 지원 시 지원주체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DON'T]

- ①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②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안됩니다.

판매수수료 지원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사례

• **사실관계**

S****은 S*****의 인터넷티비(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함. (지원금액 약 19,992백만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본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로 전이되었으며, 그 결과 S*****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고, S****은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S*****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9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S**** 3,198백만, S***** 3,198백만)

3) 인력 지원행위

의미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①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②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③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DO]

업무지원을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합니다.

[DON'T]

계열회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담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금, 인력지원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사례

• 사실관계

기업집단 ‘이**’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2014~2017년 기간에는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① 이*****은 2016. 12. 31. 이****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총 67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한 후, 2017. 6. 30.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주었다. ② 또한 이*****은 의류브랜드 ‘S***’를 이****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2014. 5. 27. 체결하고 2014. 7. 1. 자산을 이전하였으나, 양도 대금 약 511억원을 2017. 6. 19. 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으며 ③ 이*****은 2013. 11. 11. ~ 2016. 3. 28. 기간 동안 이**** 대표이사의 인건비 185백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본 건 지원행위(①~③)는 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총 1,071억 (부동산 560억, 자산양수도 511억)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또한 이*****의 인력 지원 행위는 다른 지원 행위들과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이*****의 손익을 개선 시켰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그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1억 (이***** 20억6천만원, 이**** 20억1천1900만원)을 부과하였다.

4) 통행세

의미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예시	① 추가된 거래 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②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③ 추가된 거래 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DO]

- ① 중간 매개자인 계열회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열회사의 구체적 역할).
- ② 중간 매개자인 계열회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③ 중간 매개자인 계열회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게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DON'T]

- ① 계열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을 통한 부당지원행위 사례

• 사실관계

2005 말 (구)L***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L*****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L*****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L***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L*****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L*****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구)L*** [(현)L*]가 직접 그리고 L*****에게 지시하여 L*****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실관계

S**그룹은 2013. 9. 부터 2018. 7. 까지 파****, 에***, 비**** 등 3개 제빵 계열사가 밀다원(밀가루), 에그팜(액란)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삼*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삼*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S**그룹은 삼*이 수직계열화 선상의 중간관리 '역할'을 했다고 해명하였으나, 공정위는 S**의 내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삼*의 실제 역할을 증빙할 만한 자료는 없었으며, 해당 통행세 거래로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S**그룹에게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S**그룹 회장과 계열사 3곳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3) 계열사 내부거래 시 가이드라인

- ✓ **[자금] 실제 적용금리와 일반 정상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자금, 자산, 부동산, 상품, 용역, 인력]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다만, **자산/상품/용역/인력거래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행위, 지원 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 시에는 더욱 더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제3자간 거래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품·용역 거래**
해당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거래 가격 정보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상가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② **직전 거래하던 구조를 계열사를 추가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거래**
종전에 직접 거래하던 구조를 계열사를 추가하는 구조로 변경할 경우, 이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지원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③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거래**
상표권 사용 계약 등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거래의 경우 되도록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거래조건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④ **내부시장 거래**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업체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1)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1) 하도급 거래

하도급거래란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수행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원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위탁'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부터 제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업(業)에 따른'이란 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 '업(業)에 대한 판단: 해당 업의 실질적 영위 및 수익창출 여부, 관련 조직 유무, 회사 정관 목적사업 기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 '위탁'이란 특정 사양·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작업을 의뢰하는 것입니다.(=그 작업 목적물의 전용(제3자에 재판매)이 곤란한 경우)

① 제조 위탁

하도급거래 유형(제조, 수리, 용역, 건설) 중 회사의 사업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은 '제조 위탁'에 해당합니다.

• 제조 위탁 대상이 되는 물품

- √ 물품의 제조·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 단순 임가공 위탁, 비대체물의 제조 위탁
- √ 규격,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 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 외주
- √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외주
- √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의 제조 위탁
-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 그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수리 위탁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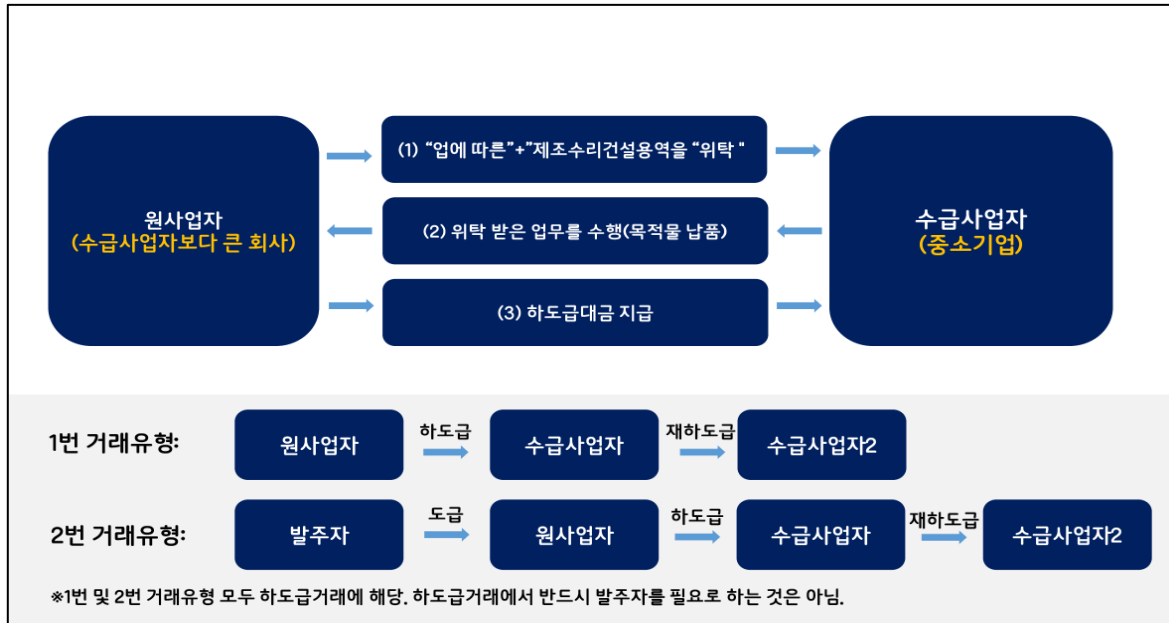
③ 건설 위탁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용역 위탁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고: 하도급거래 관계도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① 법 적용 대상 사업자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¹, 수급사업자 등

② 법 적용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법 제23조)

-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한다.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③ 법 적용대상 위탁 유형

- 제조위탁: 제조,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¹ 다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일 경우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특정 금액(2021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20억원 → 30억원 미만으로 면제 범위가 확대됨)보다 적을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위탁의 범위
 1.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 제조 포함)
 2.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3.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4.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5.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용역위탁의 범위
 1.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영상광고물, 건축설계, 그래픽디자인 등)
 2. 역무의 공급 위탁(엔지니어링(설계 제외), 화물 운송주선, 건축물의 유지관리, 경비 등)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위탁내용
제조위탁	제조/수리/건설업자	다른사업자	물품의 제조(제조위탁 물품범위 고시)
수리위탁	수리업자	다른사업자	수리행위
건설위탁	건설업자	건설업자	건설공사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업자 -역무의 공급업자	용역업자	용역수행 범위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역무의 범위 고시)

(2)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1)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요약

계약 체결 단계	계약 이행 단계	대금 지급 단계	전체 거래 과정
-서면발급 보존의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부당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의 금지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부당 반품의 금지 -부당 감액의 금지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선급금 지급 의무 -물품 구매대금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기술자료제공요구/유용금지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탈법 행위의 금지

2) 하도급 거래 단계별 유의사항

- 계약 체결 단계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원사업자는 발주 시 수급사업자나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의 중요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회사 또는 대표자의 명의 기명날인(서명)을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공인전자서명도 가능)

• 법정 기재사항

- 하도급 서면 8대 법정 기재사항

- a. 위탁일
- b. 위탁의 내용
- c.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d.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e.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f.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 g.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h.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예외: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 가능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면서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를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추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은 7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 단순 물량 증가를 넘어서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교부 및 보존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법정기재사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서면은 하도급 계약 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양 당사자 모두 서명,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②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그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③ 부당특약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약정 유형

- a.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b.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c.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d.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위법행위 예시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서면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설명서에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기재된 경우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④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판단요건

- 객관적 요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지 여부
- 주관적 요건: 하도급대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 위법행위 예시

- 부당한 방법에 대한 예시

- √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 시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단가결정 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량 증감에 따른 단가 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일률적 인하에 대한 예시

-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 일정률로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하하는 행위

- 목표 할당 예시

-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구매비용 절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 가격 또는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 인하 예시

-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 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할당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네고(Nego)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은 아님

- 계약 이행 단계

① 부당한 발주 취소(수령거부) 금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주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 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 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 등의 구매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자재 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하여 하도급 결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차액 보전 및 증액이 필요합니다.

③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수출품을 제조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하면 적법합니다.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목적물이 원사업자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됩니다.
- 검사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 시 샘플 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 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 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⑤ 부당 반품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부당 감액 금지

계약 시 이미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계약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감액하여서는 안됩니다.

• 감액 시 서면 교부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적어 해당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 √ 감액의 사유와 기준
- √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 감액 금액
- √ 공제 등 감액 방법
- √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⑦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법 위반 예시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

- 대금 지급 단계

①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는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현금결제 비율의 유지 의무

- 물품 등 검사 기간 등에 불구,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 지연이 됨.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② 선금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비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 금액을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건설 위탁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⑥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⑦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로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함

⑧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⑨ 부당한 대물 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 주의사항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합의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서’ 라는 부분을 삭제해 대물변제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단,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는 대물 변제가 가능합니다.

- 전체 거래 과정

①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술자료 요구서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 기술자료 제공요구목적
- ✓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 요구 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 귀속 관계
- ✓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비밀유지계약 체결² 의무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 ✓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방법 및 절차

² 2022년 개정 하도급법 반영(개정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한편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위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② 부당 경영 간섭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됩니다.

•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 내에 협약 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2차 수급 사업자에 대해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 협약 체결에 따라 지원한 부분에 관하여만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 전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문서화하고 통보

③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 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④ 탈법 행위의 금지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법위반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금지사항 요약

Do	Don't
서면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서류보존(3년)의무	물품 구매강제금지
선급금지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내국신용장개설의무	부당한 반품금지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부당한 감액금지
하도급대금지급의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금지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보복조치금지
	탈법행위금지

3) 위반 시 제재

구분	제재 내용	비고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 -공표명령 -과징금: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상습 법위반자 조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칙	-하도급 대금 2배 이하 벌금: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3억원 이하의 벌금: 보복조치금지 위반자 -1.5억원 이하의 벌금: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한 자, 경영간섭,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법원
손해배상 ³	-하도급 거래선이 입은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배상 -부당대금결정/감액/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기술자료유용/보복행위 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 가능	민사소송

4) 하도급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

- ✓ 하도급관계 서류들을 3년 이상 보존할 것(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
-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을 것
- ✓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을 것
- ✓ 검사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에 10일을 경과하지 말아야 함
-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함
- ✓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 함
-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을 것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준수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
-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하여야 함

5) 의결 및 보도 사례

① ㈜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2021.02.17, 공정위 의결, 2018서제2518)

- ㈜만*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만*에서 추천하는 자를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영간섭하여 경고 조치를 받음.

② ㈜에*****의 용역 이후 계약 서면 발급을 통한 하도급거래 위반 사례

(2020.08.11, 공정위 의결, 2019서제0044)

³ 개정 하도급법 에 따라 20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되는 하도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에 수급사업자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원사업자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자료가 원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개정 하도급법 제35조의2~제35조의5).

- (주)에*****는 콘텐츠 기획 및 설계 업무 등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착수한 이후 계약 서면을 발급한 점, 디자인 관련 업무를 위탁하면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점이 문제가 되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음.

③ (주)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사례

(2022.01.18, 공정위 의결, 2019서제2473)

- (주)비***는 간접 납품거래(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받음.

④ (주)쿠*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사례

(2022. 04. 20. 공정위 보도, 의결 전)

- (주)쿠*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단가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전달하여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였고, 하도급 업체들에게 밥솥 등에 장착되는 부품에 관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주)쿠*과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목적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표시광고의 구분

- **표시**
: 사업자가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광고**
: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론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소비자오인성)을 표시·광고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 (1)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 등 뿐 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
- (2)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거짓·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3) 사업자는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고 구매선택을 왜곡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②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판단기준

- **소비자오인성**
: 보통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정거래 저해성**
: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개정 고시 참조)

-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
- 특정 집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시) 어린이 광고인 경우 어린이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자의 광고 전달 의도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
-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 기준 판단
 - (1) 간접적 표현, 문자의 의미 등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
 - (2) 전문 어휘 등의 깊은 이해를 배제
-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며, 실제 기만 당했다는 입증 필요 없음
- 소비자 오인성이 부정되는 경우:
 - (1)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인 경우
 - (2)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인 경우 예시) 최적의 입지, 최고의 강사진 등
 - (3) 주관적인 판단인 경우(맛, 느낌, 냄새 등)

–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기준(개정 고시 참조)

-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며, 실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입증 필요 없음
- 거짓·과장광고: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됨
- 은폐·축소광고: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됨
 - (1)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성능, 효능, 품질에 관련된 내용
 - (2)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내용
 - (3) 가격, 철회권 등에 관련된 내용
 - (4)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내용
-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는 경우
상품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공익캠페인, 대회참가 유도 등을 위한 광고)

③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인정된다.

√ 체험기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 표시·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을 거짓으로 평가하는 행위 등

•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함.

√ ‘사실의 은폐’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상품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사항을 생략 또는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광고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있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됩니다.

√ 이동전화 무료통화를 일정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치 기간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기간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보다 상품 노출이 많은 경우 이는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충족하여 공개해야 함.

구분	일반원칙	설명
1	접근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
2	인식 가능성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3	명확성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
4	언어 통일성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비교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경쟁사업자가 광고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거나 전체적인 문언을 통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함. 다만 비교상대방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광고 당시의 시장구조가 과점상태에 있어 소비자들이 경쟁 사업자를 쉽게 연상할 수만 있어도 비교 대상의 특정성은 인정함.

√ 한*****는 세제 광고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일반 세제에 비하여 6배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했다.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비방적인 ·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 비방하는 것을 말함

√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도로여건, 차량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단지 경쟁사업자의 차량 사고율이 높은 사실만을 들어 경쟁사의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해당

√ 4년째 군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메***가 경쟁사의 보*** ***** 제품이 가짜인 것처럼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만과 비방 광고 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④ 표시광고행위에 관한 일반지침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1)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등에 대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 생산규모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광고하는 경우
- ✓ 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 구체적인 사업 진척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 기일 00년 0월, 준공기간: XX년 XX월”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2. 가격에 관한 경우

1) 가격의 비교

예) 허위의 이전 판매가격 또는 허위의 시가 등을 내세워 마치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2) 할인판매

- ✓ 00아동복에서 의류는 3~40%, 용품은 50%할인하면서 “00아동복 50% 세일”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 캔커피 10종 중 3종만 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 광고하는 경우
-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창고 대공개”라고 표시하여 할인특매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3. 원재료, 성분에 관한 경우

- ✓ 실제 사용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 부가적인 원재료나 성분을 전체의 주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4. 품질, 성능, 효능에 관한 경우

- ✓ “휘발유 1L로 00km 주행”이라고만 하고, 기준이 시내인지 고속도로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 ✓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5. 규격, 용량, 수량에 관한 경우

- ✓ 냉방기의 적정 사용면적이 15평임에도 “24평형”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 냉장고 실내용적이 250L임에도 외형적 크기인 300L를 기준으로 하여 “300L 신모델 개발”이라고만 광고하여, 마치 실내용적 300L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6. 특징에 관한 경우

- ✓ 상품의 특징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
- ✓ 주원료가 천연원료이긴 하지만 부원료와 화학반응으로 얻어진 제품을 “천연 000”라고 광고하는 경우

7.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경우

- ✓ 외국 수입상품을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원산지와 관계 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국가가 원산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 외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태극기를 그려넣는 등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8. 보증에 관한 경우

- ✓ 보증의 내용, 기간에 대한 내용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무조건 보증”이라고만 표기하여 완벽하게 보증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에 한정된 A/S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국적 A/S조직망” 등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9. 추천, 권장 등에 관한 경우

- ✓ 해당 상품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광고하는 경우
- ✓ 해당 상품에 대한 실제 시험, 검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전문가의 추천을 광고하는 경우
- ✓ 참가상을 받은 것을 품질이 우수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10.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경우

- ✓ 주의사항, 용도 등이 기재된 설명지가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 후 표시하는 경우
- ✓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11. 경쟁사업자 및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

- ✓ 자사의 14인치 TV를 경쟁사의 20인치 TV와 비교하여 자사 제품을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경우
- ✓ 침대 도금 여부는 침대 수명과 상관이 없는데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굳이 녹슬지 않는 OO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여 타사 침대를 비방하는 경우

12. 누락, 은폐 등의 경우

- ✓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 ✓ 유행 상품을 세트로 구성해 팔면서 구식 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13.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경우

- ✓ 경품류 제공 사실을 광고하면서 경품의 내용, 제공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
- ✓ 증정,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부대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① 중요정보 공개 제도

소비자가 합리적 상품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 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광고실증제도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임시중지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절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1. 행정적 제재

1)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표시광고법 제7조)

2) 과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3) 벌칙

(1) 형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제17조)

(2) 과태료 : 조사방해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제20조)

5) 표시·광고행위 시 유의사항

- ✓ 표시·광고행위 시 실무에서 임의제작하는 광고는 반드시 본사 준법지원팀과 협의할 것
-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되므로 필요시 동종의 상품에 대해 비교광고를 하되,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할 것
-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회사 홍보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표현을 수정할 것
- ✓ 사소한 민원이라도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규제기관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에 유의할 것
-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지양할 것
- ✓ 표시나 표현을 확정하기 전에 항상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
- ✓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제기될 수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6) 의결 사례

① K**의 실제보다 성능을 과장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관한 사례

(2020.12.4, 공정위 의결, 2019안정0071)

- K**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창호 및 유리 제품에 대하여 “냉난방 에너지 최대 40%절감” “에너지 절감비용 140만원(또는 170만원)” 등 실제보다 성능을 과장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행위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2천8백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② 바****의 ‘하**’ 제품과 관련한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관한 사례

(2020.07.17 공정위 의결, 2019안정0567)

- 바****는 안마의자 하** 제품을 광고하면서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위 고발 및 시정명령 및 정정광고,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 받았음

③ 메*****의 ‘벤*’ 차량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관한 사례

(2022.02.06 공정위 보도, 의결 전)

- 메***** (이하 벤*)는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았음. 벤*는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 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음.

④ 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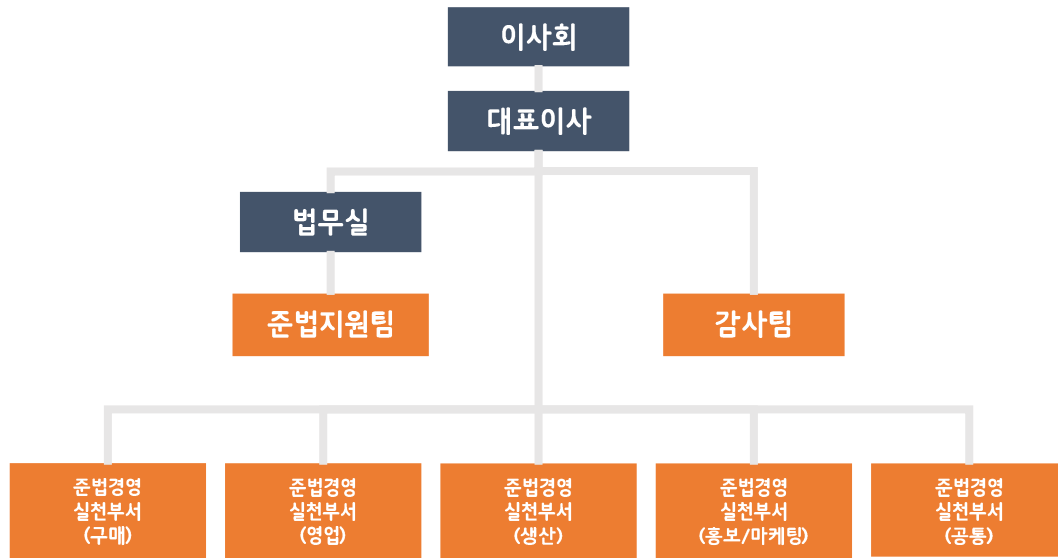
(2022. 03. 17. 공정위 의결, 2019 서소 1079)

- 에**은 공인중개사 등 온라인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포함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600만원 처분을 받음.
- 에**은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라고 광고하였는데,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만 근거한 것이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였을 뿐이었으나,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한 것임을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하였음.

제 3 장 삼양식품(주)의 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

1. 조직도 및 관련 부서

(1) 조직도



(2) 관련 부서

구분	주요 역할
준법지원인 (준법지원팀)	- 준법통제 및 지원 업무 수행 - Compliance Program 구축 및 운영 (준법경영준수 편람 제·개정 등) - 공정거래법 등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점검 / 개선권고 - 임직원 교육 - 최고경영진(대표이사 등) 직접 보고
감사팀	- 내부감시체계(내부고발시스템-사이버 감사실) 운영 - 준법 경영 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 최고경영진(대표이사 등) 직접 보고
준법경영 실천부서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윤리행동지침 등과 같은 사내규정 준수 - 업무 진행 중 공정거래 관련 사항의 경우 사전 업무협의 진행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제보(사이버 감사실 등) - 업무 과정 전반에서의 관련 법규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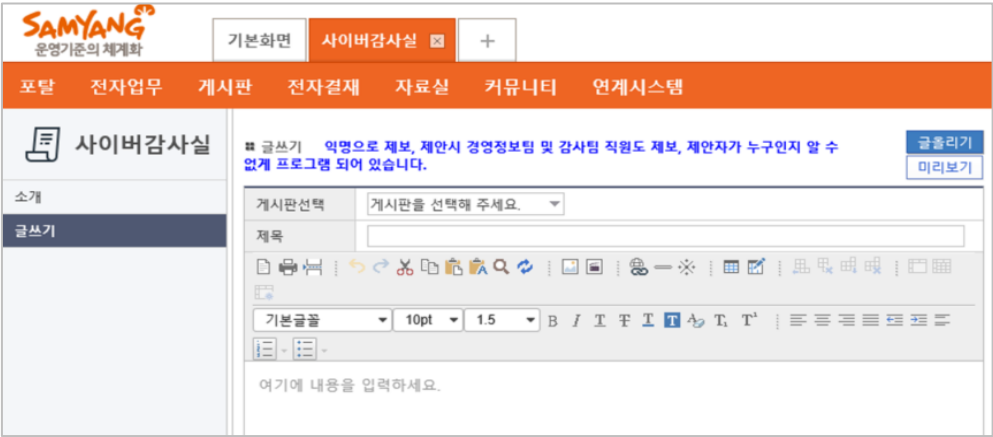
2. 내부감시체계 운영

(1) 직무전결규정(사내 직무전결 규정 참고)

사내 전결 규정은 의사결정권에 책임을 부여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문화를 드러내기도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계약 포함),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부의 사항, 주요 규정 개폐 사항 등에 대하여 '합의' 절차를 통해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내부고발시스템(사이버감사실)

정의	임직원이 준법경영 실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확인 하였을 경우 제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방법	• 신고·제보 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삼양식품 감사팀 또는 준법지원인 - 이메일: audit@samyangfoods.com - 유선: 02-940-3000(대표번호 후 감사팀장 또는 준법지원인 연결) - 임직원용 그룹웨어-사이버감사실  ※ 양식은 자율이며, 자세하게 작성 시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경영-윤리행동원칙-약관”을 참조바랍니다. • 주요 신고·제보사항 √ 업무 관련 법률·명령·규칙·지침·계약 위반 행위 √ 회사의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협력사와의 계약 위반 또는 불공정거래, 반부패, 청탁 등 부당행위 √ 그 외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 신고·제보자 보호 시스템 √ 제보 내용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열람권자를 제한 /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 √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 제보자를 추적하지 않음 √ 제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관계등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를 진행함 • 신고·제보사항 처리 프로세스 준법경영 실천 원칙 위반 관련 신고 → 신고내용 접수 → 위반행위 식별(사실관계 확인) → 상세원인 분석 → 최고 경영진 직접 보고 → 징계관리 위원회 사건 이관 → 징계 여부 심의 → 징계

3. 준법자율점검 Checklist

(1) 준법자율점검 Checklist (21.11. 준법지원팀 시행)

1) 목적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자가진단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성숙한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대상: 삼양식품 전 임직원

3) 내용

- 공통준수사항 : 윤리규범 및 복무규정, 부정청탁금지 등
- 부문별 사항 :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각종 규정 및 프로세스 준수여부

* 21.11. 삼양식품 전 임직원 대상 실시 체크리스트 일부 발췌

구분	문항	예	아니오	비고
일반공정거래	본격적인 거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고 있는가?			
	거래상대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변경한 적이 없는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 없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지 않는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않는가?			
	계약, 협정, 결의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지 않는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 등을 제한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가?			
하도급거래	제조 위탁 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가?			
	제조위탁 목적물의 사양, 구조, 디자인, 발주자의 요청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조정하고 있는가?			
	제조 위탁한 물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위탁을 취하하거나 수량을 거부, 지연한 적은 없는가?			
	하도급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지나기 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